

충주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2012. 6. 13(수) 10:00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98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99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1	(4) 충주시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402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56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심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12.06.04	2012.06.05	2012.06.12	2012.06.12	서성식 의원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6.04	2012.06.05	2012.06.12	2012.06.12	기획감사과장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6.04	2012.06.05	2012.06.12	2012.06.12	기획감사과장
(4) 충주시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2012.06.04	2012.06.05	2012.06.12	2012.06.12	기획감사과장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6.04	2012.06.05	2012.06.12	2012.06.12	회계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하도급업체의 보호(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 근로자 등의 보호(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실천적 실용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업무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조정 (안 제7조)
 - 부서 신설 : 여성청소년과, 스포츠산업과 (문화복지국)
 - 부서 명칭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 사업소 조정 (안 제17조제4호)
 - 통폐합 : 공공시설관리소 + 체육시설관리소 → 공공시설관리소
 - 폐지 : 충주여성문화회관(업무→여성청소년과로 담당기능 전환)
- 분담업무의 조정
 -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문화복지국에 분담 (안 제7조제2항제6호)
 -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관리소에 분장 (안 제17조제6호제사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신규 행정수요(사회복지 및 문화·체육분야 등) 증가에 따른 부서 또는 담당 신설과 일부 시설·기능 등이 유사한 사업소 및 담당 통·폐합 등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 2]

-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재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조정	17%이내 (증 14%)	83%이상 (감 14%)	9%이내 (증 3%)	91%이상 (감 3%)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별표 3]

- 5급 : 본청 22명→24명(2명 증), 사업소 11명→9명(2명 감)

(4)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도록 충주시 조례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여 충주시민의 이해를 돋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글맞춤법 규정」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도록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2011.6.28)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1급) 관사의 면적 기준 신설(안 제51조의2)
 - 독립형 관사 : 116㎡이하
 - 아파트형 관사 : 99㎡이하(전용면적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체불제 실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지불 서약서 징구,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 예고문자 발송, 체불 임금·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6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서 지역 근로자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는 문화복지국의 사무에 충주여성문화회관을 폐지하여 소관사무인 충주여성문화회관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일부인 여성 및 아동, 청소년 업무와 폐지되는 여성문화회관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였음.

안 제17조는 공공시설관리소와 체육시설관리소를 통·폐합하여 공공시설관리소에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 테니스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직 개편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분야를 축소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구조정의 심사과정에서 국이나 과의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는지, 과의 업무 및 명칭은 적합한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 또는 담당 신설과 유사한 사업소 및 담당 통폐합 등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정원의 총수에 증감 없이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 정원책정 기준 조정내역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정원의 증감 없이 현재 정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본청에 여성 청소년과와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고 사업소에 충주여성문화회관이 폐지되고 공공시설관리소와 체육시설관리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본청은 일반직 5급은 2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일반직 5급 2명이 감소하였음.
- 검토결과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충주시의 업무 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한글 맞춤법 규정」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 조례에서 다른 법령의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다른 내용과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법령 이름 앞뒤에 낫표「」를 붙이도록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를 위해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안 제51조의2항에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을 독립형 관사는 $116m^2$ 이하로, 아파트형 관사는 $99m^2$ 이하(전용 면적 기준)로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의하면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역 특성 등 존치 불가피한 경우 조례 등에서 면적 등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1급 관사는 충주시 봉방동 소재 소망아파트로 $85m^2$ 임
- 검토결과 시정운영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1급 관사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계약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는?

○ 답변 : 1억원 미만은 제한 입찰을 하기 때문임.

▶ 질의 : 현재 선급금은 몇 %인가?

○ 답변 : 조기집행으로 70%까지 주고 있음.

▶ 질의 :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 답변 : 권고하는 것만 가능하지 의무사항을 둘 수가 없음.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교육지원담당은 어떻게 되는가?

○ 답변 : 총무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함.

▶ 질의 : 스포츠산업과는 외래어인데 명칭을 순화해야 되지 않는가?

○ 답변 : 요즘은 외래어가 우리말처럼 상당히 꽤 많이 사용하고 있음.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사업소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 답변 :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여 소요가 생긴 부서에 배치를 해야함.

(4) 충주시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 질의 : 없음.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

○ 답변 :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면적기준만 정한 사항임.

▶ 질의 : 면에 있는 관사를 매각할 용의는?

○ 답변 :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과 명칭변경 :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제2항 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제7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u>스포츠산업과</u> , 관광과를 둔다. ② (생략) 1. ~ 6.(생략)	제7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u>체육진흥과</u> , -----. ②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체육과장”을 “ <u>스포츠산업과장</u> ”으로 한다. ③ ~ ⑤(생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u>체육진흥과장</u> ”으로 한다. ③ ~ ⑤(개정안과 같음)